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21777호, 2026. 6. 9. 공포, 2026. 9. 10. 시행)됨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1조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8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을 “인구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령”을 “인구전략기본법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2 중 “저출산 및 고령화”를 “인구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저출산 및 고령화”를 각각 “인구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1. 인구전략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2. 인구정책의 수립 및 개발
4. 인구전략위원회에 대한 지원·협조

별표 2 중 총계 “902”를 “911”로 하고, 일반직 계 “892”를 “901”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63”을 “64”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02”를 “305”로

하고,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85”를 “89”로 하며,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46”을 “47”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905”를 “914”로 하고, 일반직 계 “895”를 “904”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63”을 “64”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02”를 “305”로 하고,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94”를 “98”로 하며,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49”를 “50”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의2 제6호 중 총계 “4”를 “5”로, 일반직 계 “4”를 “5”로,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1”을 “2”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보건복지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8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보건의료정책실 간호정책과	3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2.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재난의 료정책과	5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2028년 9월 30일까지
3. 보건산업정책국 제약바이오 산업과	3명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4.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 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5. 지역필수공공의료실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6.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지역필 수의료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7.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지역필 수의료총괄과	9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8.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지역의 료정책과	4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7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9. 지역필수공공의료실 필수 료정책과	4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 명)	2029년 6월 30일까지
10. 지역필수공공의료실 국립대 병원정책과	5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3명)	2029년 6월 30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제8조(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①·②(생략)	①·②(현행과 같음)
③ 인구아동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18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③ -----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④ ~ ⑥(생략)	④ ~ ⑥(현행과 같음)
⑦ 인구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u>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u>	1. <u>인구전략기본계획의 수립 지원</u>
2. <u>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 및 개발</u>	2. <u>인구정책의 수립 및 개발</u>
3. <u>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자원 조달</u>	3. <u>인구정책</u> -----
<u><신 설></u>	4. <u>인구전략위원회에 대한 지원</u>
5. 삭 제	<u>· 협조</u>

6. <u>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령</u>의 제정·개정 및 관련 제도 개 선 6의2. <u>저출산 및 고령화</u> 관련 언 론 모니터링 7. <u>저출산 및 고령화</u> 관련 조사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8. <u>저출산 및 고령화</u> 관련 홍보 및 국민인식개선 추진 9. ~ 14. (생 략) 15. <u>인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u> 16. ~ 18. (생 략) ⑧ ~ ㉓ (생 략)	6. <u>인구전략기본법령</u>----- ----- -- 6의2. <u>인구정책</u> ----- ----- 7. <u>인구정책</u> ----- ----- 8. <u>인구정책</u> ----- ----- 9. ~ 14. (현행과 같음) <u><삭 제></u> 16. ~ 18. (현행과 같음) ⑧ ~ ㉓ (현행과 같음)
---	--